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책 임 자	정용원 국장(3145-770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2156-9923)
	이봉현 국장(3145-7290)		김 신 팀 장(3145-7730) 김철호 팀 장(3145-7302)
배 포 일	2016. 1. 20. (수)	배 포 부 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14매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 20.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양에이치씨(주)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주)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건의,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2016.1.20. 의결)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우양에이치씨(주) 결산기 :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09.30. 비상장법인 (舊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설비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회사】 ① 매출·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07.12.31.: 23,792백만원, '08.12.31.: 38,650백만원, '09.12.31.: 42,409백만원, '10.12.31.: 72,936백만원, '11.12.31.: 105,917백만원, '12.12.31.: 144,302백만원, '13.12.31.: 137,258백만원, '14.9.30.: 137,757백만원) - 수주계약 취소·공사중단된 공사에 대하여 허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였으며, 공사현장별 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및 매출채권 (미청구공사채권 포함)을 과대계상 한편, 허위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가공의 원재료비 및 유형자산으로 대체, 매출채권 담보 차입거래를 양도거래로 처리, 매출원가를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현금지급시점에 인식하면서 원가를 허위배부 ② 매출 관련 총당금 등 과대·과소 계상 ('07.12.31.: 1,719백만원, '08.12.31.: 1,719백만원, '09.12.31.: 1,363백만원, '10.12.31.: 17,303백만원, '11.12.31.: 17,776백만원, '12.12.31.: 8,376백만원, '13.12.31.: 4,642백만원, '14.9.30.: 3,646백만원) - 매출채권 연체기간 조작과 매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대손총당금, 하자보수총당금을 과대·과소계상하였고, 매출·공사예정원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사손실총당금을 과소계상 ③ 대표이사 횡령·배임 관련 기타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 ('07.12.31.: 1,523백만원, '08.12.31.: 2,328백만원, '09.12.31.: 2,681백만원, '10.12.31.: 1,857백만원, '11.12.31.: 2,868백만원, '12.12.31.: 1,000백만원, '13.12.31.: 734백만원, '14.9.30.: 435백만원) - 前 대표이사 등이 횡령한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기타대손상각비를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원재료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	회 사 : - 검찰고발 (회사 및 前 대표이사 2명, 前 임원 2명)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2016.1.1.~2018.12.31.) - 시정요구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우양에이치씨(주)	④ 지분법 주식 과소계상 및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12.12.31.~’14.9.30)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피를 위해 종속회사인 OO 주식회사 지분(지분을 90%)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분법주식(786 백만원)을 과소계상하는 한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⑤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등 (‘12.12.31.: 76,496백만원, ’13.12.31.: 74,601백만원, ’14.9.30. 104,629백만원) - 회사는 OO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90%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양사간 거래내역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 - 한편, ‘14.9월말 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대여금의 1%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자기자본(20,828백만원) 과대계상	
	⑥ 외부감사 방해 - 매출·매출채권 등에 대한 분식회계사실을 은폐 하기 위하여, 감사인에게 위·변조된 감사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	
	⑦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12.7.16.자 증권신고서에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15기(‘10.1.1.~’10.12.31.) 에서 제16기(‘11.1.1.~’11.12.31.) 재무제표를 사용	
	[2007.12.31.] 당기순이익 8,574 → △2,091 자 기 자 본 28,322 → 2,517	
	[2008.12.31.] 당기순이익 791 → △13,143 자 기 자 본 25,301 → △14,440	
	[2009.12.31.] 당기순이익 8,624 → 5,532 자 기 자 본 67,427 → 24,595	
	[2010.12.31.] 당기순이익 7,418 → △33,919 자 기 자 본 76,143 → △8,027	
	[2011.12.31.] 당기순이익 7,003 → △21,055 자 기 자 본 50,534 → △62,439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우양에이치씨(주)	[2012.12.31.] 당기순이익 6,738 → △22,228 자 기 자 본 87,762 → △54,177	
	[2013.12.31.] 당기순이익 11,451 → 15,911 자 기 자 본 129,940 → △7,540	
	[2014.9.30.] 당기순이익 5,199 → △14,460 자 기 자 본 152,951 → △4,188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우양에이치씨㈜	<p><신한회계법인 : '09.1.1.~'12.12.31.></p> <p>①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09.12.31.: 41,974백만원, ’10.12.31.: 72,130백만원, ’11.12.31.: 104,679백만원, ’12.12.31.: 138,517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제시 증빙자료(수주계약서, 예산서, 원가증빙, 재공품 목록 등)와 원장내역과의 대조·확인 소홀, 매출채권 조회서 발송에 대한 감사소홀^{*1}, 매출채권 조회대상 목록에 대한 완전성 미확인^{*2}, 미청구공사채권 실재성에 대한 감사소홀^{*3}, 완성공사에 대한 감사소홀^{*4}, 매출채권 담보차입 거래에 대한 계약서 미확인 및 팩토링 대상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미확인 등으로 회사의 매출 과대계상 및 차입금 과소계상 사실 등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p> <p>*1 매출채권 조회서 발송을 회사를 통해 실시 *2 조회대상 목록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공사중단 프로젝트에 대한 조회누락 *3 미청구공사 금액이 총자산의 40%에 달하고, 대금 청구율과 공사진행율의 차이가 큰 공사가 다수 있었음에도 명세서 확인 등의 절차 외에는 입증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음 *4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외부감독관의 공사완료확인서 등의 증빙 미확인 및 증빙확인 소홀</p> <p>② 매출관련 총당금 감사절차 소홀 (’09.12.31.: 1,353백만원, ’10.12.31.: 17,303백만원, ’11.12.31.: 17,776백만원, ’12.12.31.: 8,376백만원)</p> <p>- 대손충당금 연체기간 정확성 확인과 매출·매출채권 관련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에 따라 관련 계정과목인 대손충당금 과대·과소계상, 하자보수충당금 과대계상, 공사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p> <p>③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 (’12.12.31.: 74,850백만원)</p> <p>- 회사가 '12.12.27.까지 특수관계자였던 OO주식회사와의 기중거래내역의 공시를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p>	<p>신한회계법인 :</p> <p>-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90%</p> <p>- 우양에이치씨(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p> <p>공인회계사 : 1인</p> <p>- 직무정지건의 2년</p> <p>-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p> <p>- 우양에이치씨(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p> <p>- 직무연수 20시간</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우양에이치씨㈜	<p><신아회계법인 : '13.1.1.~'13.12.31.></p> <p>①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3.12.31.: 133,012백만원)</p> <p>- 회사의 내부통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입증 감사 성격·시기·범위를 확대하지 않았고^{*1}, 회사제시 증빙자료(수주계약서, 재공품 목록 등)와 원장내역과의 대조·확인 소홀, 미청구공사채권 실재성에 대한 감사소홀^{*2}, 완성공사 실재성 확인 대한 감사소홀^{*3} 등으로 회사의 매출 과대계상 사실 등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p> <p>*1 질문과 분석적 검토, 회사 내부증빙에 의존한 감사절차 수행 *2 공사진행률과 대금청구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전년도에 이미 공사완료된 프로젝트의 미청구율이 높은 이례적인 상황임을 파악하였음에도 정구한 수주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추가적 절차 없이 인터뷰만으로 감사절차 종결 등 *3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외부감독관의 공사완료 확인서 등 증빙 미확인</p> <p>② 매출관련 총당금 감사절차 소홀 (’13.12.31.: 6,836백만원)</p> <p>- 대손충당금 연체기간 정확성 확인과 매출·매출채권 관련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에 따라 관련 계정과목인 대손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p>	<p>신아회계법인 :</p> <p>-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90%</p> <p>- 우양에이치씨(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p> <p>공인회계사 : 1인</p> <p>- 등록취소건의</p> <p>-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p> <p>- 우양에이치씨(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p> <p>- 직무연수 20시간</p> <p>- 검찰고발</p>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p> <p>결산기 : 2013.6.30. 비상장법인 업종 : 상호저축은행업</p> <p>※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14.10.31.주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을 흡수합병</p>	<p>【회사】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p> <p>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3.6.30. : 5,59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회차 과다,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차입금 과다, 폐업 등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은 이를 반영하고, PF대출채권은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p>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13.6.30. : 7,41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저축은행(SBI3,4)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분법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p>③ 골프회원권 등 손상차손 미인식 ('13.6.30. : 17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의 공정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p>[2013.6.30] 당기순이익 △339,700 → △352,882 자 기 자 본 △217,509 → △230,691</p>	<p>회 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회사 80백만원) - 증권발행제한 1월 - 감사인지정 1년 ('2016.1.1.~2016.12.31.)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p>	<p>【주에스비아이2저축은행】</p> <p>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2.6.30. : 33,334백만원, '12.12.31. : 68,486백만원, '13.6.30. : 7,88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회차 과다,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차입금 과다, 폐업 등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은 이를 반영하고, PF대출채권은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회수예상가액 산정오류 여신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p>②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12.6.30. 및 '12.12.31. : 6,34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평가시 개발감정에 따라 과대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적용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 <p>③ 미분양부동산 관련 이자수익 과대계상 ('12.12.31. : 86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납입된 이자는 당시 저조한 분양률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 <p>④ 무형자산 과대계상 ('12.12.31. : 15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신규시스템이 영업에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상각개시 요건을 충족함에도 상각하지 아니함 <p>⑤ 대출수수료 등 과대계상 ('12.12.31. : 19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차주로부터 수취한 대출수수료 등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대출기간에 걸쳐 수익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시에 인식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	⑥ 임원 대여금 미계상 ('12.12.31. : 501백만원) - 회사가 경영진의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하게 회사 자금으로 지원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미계상 [2012.6.30.] 당기순이익 $\Delta 27,322 \rightarrow \Delta 66,996$ 자 기 자 본 $62,534 \rightarrow 22,860$ [2012.12.31.] 당기순이익 $\Delta 47,133 \rightarrow \Delta 122,671$ 자 기 자 본 $15,170 \rightarrow \Delta 60,368$ [2013.6.30.] 당기순이익 $\Delta 183,895 \rightarrow \Delta 191,779$ 자 기 자 본 $\Delta 131,362 \rightarrow \Delta 139,246$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3.6.30. : 4,763백만원) - 대출채권의 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평가하거나, 대출채권 관련 경매 등 법적 절차 진행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PF대출채권의 사업성 평가 등을 잘못하여 자산 건정성을 부당하게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13.6.30. : 309백만원) - 회사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평가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계상	
	[2013.6.30] 당기순이익 $\Delta 62,318 \rightarrow \Delta 67,389$ 자 기 자 본 $\Delta 40,127 \rightarrow \Delta 45,198$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에스비아이4저축은행】 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2.6.30. : 14,100백만원, '13.6.30. : 4,444백만원) - 연체회차 과다,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차입금 과다, 폐업 등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은 이를 반영하고, PF대출채권은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회수예상가액 산정오류 여신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12.6.30. : 5,721백만원) - 회사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평가시 개발감정에 따라 과대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적용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 ③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12.6.30. : 2,609백만원) - 회사 보유 주식에 재무상황 악화 등 손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 ④ 파생상품 미계상 등 ('12.6.30. : 612백만원, '13.6.30. : 3,591백만원) - 보유 중인 신주인수권을 파생상품으로 계정 분류 하고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함 ⑤ 임원 대여금 과대계상 ('13.6.30. : 110백만원) - 경영진의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하게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대여금 계상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감액하지 아니함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	<p>⑥ 연체여신 관련 이자수익 과대계상 ('13.6.30. : 3백만원)</p> <p>-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체채권에 대하여 이자수익을 인식</p> <p>[2012.6.30.] 당기순이익 25,953 → 3,522 자 기 자 본 100,151 → 77,720</p> <p>[2013.6.30.] 당기순이익 △59,771 → △63,864 자 기 자 본 11,787 → 7,694</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	<p>【감사인】 : ㈜에스비아이2저축은행</p> <p>①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6.30. : 22,181백만원)</p> <p>- 회사가 차입금 과다·폐업 등 부실징후가 있는 여신, 연체회차 과다 여신, NPL 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음에도,</p> <p>회수예상가액 산정, 담보제공 내역 확인 및 NPL채권의 평가 등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②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6.30. : 3,700백만원)</p> <p>- 회사가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평가시 개발감정에 따라 과대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적용하여 회수예상 가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였음에도,</p> <p>사용한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가정과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삼정회계법인 :</p> <p>-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p> <p>-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舊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p>	<p>【감사인】 : (주)에스비아이4저축은행</p> <p>①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6.30. : 10,635백만원)</p> <p>- 회사가 차입금 과다·폐업 등 부실징후가 있는 여신, 연체회차 과다 여신, NPL 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음에도,</p> <p>회수예상가액 산정, 법적절차 종료 및 NPL채권의 평가 등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②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6.30. : 3,412백만원)</p> <p>- 회사가 보유 비업무용부동산 평가시 개발감정에 따라 과대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적용하여 회수예상가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였음에도,</p> <p>사용한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가정과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과대 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③ 매도가능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6.30. : 3,221백만원)</p> <p>-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였음에도,</p> <p>평가 및 계정 분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삼정회계법인 :</p> <p>-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p> <p>- (주)에스비아이4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p> <p>공인회계사 1인</p> <p>- (주)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p> <p>-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p> <p>- 직무연수 6시간</p>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의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